

다산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임대상가 임차인 모집 공고

(대상 : 사회적기업/ 청년창업기업/ 경력단절여성)

신청자 유의사항

- ◆ 금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임대상가(이하 “상가”라고 함)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1년1월26일(금)이며 모든 신청자격 기준은 공고일 현재입니다.
- ◆ 금회 공급되는 상가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10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합니다.
- ◆ 2년 단위 계약 갱신은 임차인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실적을 평가하며, 기준 미달일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.
- ◆ 금회 공급되는 상가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주택관리2부 6층에서 신청(방문접수)을 받으며, 공모·심사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.
- ◆ 월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
- ◆ 임차인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.
- ◆ 금회 공급되는 상가는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,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해지 조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공사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, 해당 상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.

1 공급개요

- 위 치 : 남양주 다산중앙로 82번길 87-17 센트럴파크6단지(다산동6107)
남양주 다산중앙로 123번길 메트로3단지(다산동6076)

- 공급대상 상가 세부내역 (단위 : 원)

블록명	아파트명(세대수)	호수	전용면적(m ²)	월 임대료	임대보증금	입점시기
지금 A1	센트럴파크6단지 (2,705)	102호	44.55	735,000	17,640,000	잔금납부후 입점가능
		103호	44.55	750,000	18,000,000	
		105호	44.55	765,000	18,360,000	
진건 A1	메트로3단지 (1,257)	103호	39.99	1,075,000	25,800,000	

※ 권장업종 : 입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업종

- ※ 중복신청안내 : 블록별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타블록간 중복신청(예. 지금A1블록 1개호실, 진건A1블록 1개호실)은 불가합니다.
- ※ 부가키치세 및 관리비 별도이며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재산종합보험 및 화재보험의 가입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- ※ 계약자는 본 상가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상가 입점자로 구성된 상가지치 관리위원회에 참여하며, 입점지정최초일로부터 상가에 대한 제반 유지관리 업무는 상가지치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.
- ※ 상가지치관리위원회 구성시, 그 일원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- ※ 금번 공급되는 상가는 입점 및 영업이 개시된 사업지구로, 사전에 현장의 제반여건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2 신청자격

○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

자격 유형	자격요건<모집공고일 기준>
사회적기업 (예비포함)	· 『사회적기업육성법』 제2조(정의)에 따른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
청년창업 기업	·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 또는 개인 ·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 ·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(만20세 이상·만39세 이하)을 대표자(대표이사)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
경력단절 여성	·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,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

- ※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는 모집공고일(21.11.26) 기준 한국사회적기업인증원(고용노동부)에서 발급하는 '(예비)사회적기업인증서'를 받은 자로 한정합니다.
- ※ 청년창업기업은 본 상가에 입점희망 목적의 사업만을 대상으로 합니다. 창업개시일의 경우,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'개업년월일'을,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'법인설립년월일'을 기준으로 합니다. 청년 대표자는 주민등록등본상(모집공고일자 기준) 청년임을 확인하며,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청년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※ 경력단절여성 자격여부는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내역)' 및 '국민연금가입증명서'의 내역으로만 판단합니다.

3 임대조건

- 업종제한 :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(기업, 기관, 단체) 제외
 - 영업 불가능 업종 :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등과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
 - 상가영업 중복 충돌 업종 : 슈퍼, 세탁소, 미용업, 일반식당 등 상가 내 입점 예정 업종과 충돌가능성이 높은 업종
 - 오염물배출 업종 등 : 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·소음발생 등 주택단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업종
 - 『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』에 의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등 관련 조례상 입점이 불가능한 업종

- 임대기간 : 2년 단위 갱신 최장 10년 (단, 자격기준 모두 충족 시에만 갱신가능)
 - 자격기준 : 임차인 모집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실적을 평가
 - ※ 입점 후, 임대조건 이행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영업현황 실사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※ 2년 단위 계약갱신 시점에 자격기준 미충족 및 실사 시 관련자료 미제출 시 계약연장이 불가합니다.
- 임대차계약 해지기준 :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1개월 내 명도
 - 입주기간 중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
 -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
 -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 - 상가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상가 표준협약상 용도제한 또는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등 임대차계약서상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4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21.12. 9.(목)~2021.12.10.(금) 10:00~17:00 ※ 중식시간 : 12:00 ~ 13:00
- 신청장소 : 경기주택도시공사 6층 주택관리처 주택관리2부
- 신청방법 : 방문접수만 가능
 - 구비서류 :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(www.gh.or.kr)에서 양식 내려 받아 사용
 -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.

대상		증빙서류	비고
기본 서류 (모두 해당)		① [별지1] 입점신청서 1부 ② [별지2] 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⑤ 대표자의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1부 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표준재무제표,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	※ 서류⑥은 관련 전문가(회계사, 세무사, 국세청 등)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
추가 서류 (해당 자)	사회적기업	①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해당자에 한함)	- 사회적기업진흥원 - 등기소, 세무서
	청년창업기업	① 대표자(공동대표일 경우 전원)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해당자에 한함)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내역) ④ 국민연금가입증명서	- 주민센터 - 등기소, 세무서 - 국민건강보험공단 - 국민연금공단
	경력단절여성	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내역)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	- 국민건강보험공단 - 국민연금공단

※ 자격검증을 위해 사업계획서상 기입된 사항에 관한 증빙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5 심사 및 선정

- 심사절차 : (1차) 서류심사 → (2차) 대면심사(PT)심사
- 서류심사 결과 발표 : 2021.12.28.(화)
- 대면(PT) 심사 예정일 : 2022. 1.13.(목)
- 최종결과발표(예정)일 : 2022. 1.14.(금)
- 심사안내 : 서류심사를 통해 호실별 면접대상기업 선정(1차 심사에서 3배수 이내 선정, 3배수 미만일 시 자격검증 통과자 전원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)
 - 1차 서류심사 : 사업계획서상 제출내역을 기준으로 고용인원, 매출액, 기업운영기간, 사업장소재지(경기도 소재기업 우대) 등 심사
 - 2차 대면심사 :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발표자료(PT)를 제작하여야하며, 대면심사로 평가함. 입점업종(권장업종 참조)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, 입주민 또는 지역 주민의 서비스 향상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심사
- 최종선발 : 대면(PT)심사에 따른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고득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을 선정하며, 경쟁이 없는 경우라도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입점 가능
 - ※ 최고득점자와의 계약 미체결시 차점자(2순위)에게 입점기회가 부여됩니다.
 - ※ 블록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, 입점신청서에 기재된 신청호실별 평가를 통해 최고득점 법인 또는 개인을 최종 입점자로 선정합니다.
 - ※ 심사결과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며, **개별 통보 하지 않으므로 개별 확인 하여야 합니다.**
 - ※ 임차인모집 미접수 및 내부사정에 의하여 해당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6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

- 계약체결 장소 : 경기주택도시공사 6층 주택관리2부
- 계약체결 기간 : 2021. 1.20.(목) 10:00~17:00
- 구비사항 (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)
 - 계약금 납부영수증

개인 계약시	법인 계약시	대리인 계약시(추가)
. 계약금 납부영수증 . 신분증 . 인감도장 . 인감증명서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인 서명서) 1통 . 주민등록등본 1통	. 계약금 납부영수증 .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. 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사항) 1통 .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통 .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※ 공동대표로 구성된 법인은 공동대표 모두 구비서류를 각각 제출	. 위임장 1통 (인감도장 날인) . 위임용 인감증명서(본인발급) 1통 . 대리인 신분증 . 주민등록등본 1통

○ 계약금 납부계좌

납부금액	임대보증금의 50%
납부계좌	농협중앙회 200-17-000068, 예금주 : 경기주택도시공사 ☞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

7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

○ 납부금액 및 납부일정

구 분	계약금	잔금	비고
납부시기	계약체결시 2021. 1.20.(목)	입점지정기간(30일간) 2021. 2.18(금)까지	※ 잔금 완납 시 입점가능 (임대차기간은 입주일 익월 1일부터 24개월간)
납부금액	임대보증금의 50%	임대보증금의 50%	

-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통보를 생략하오니 상기 납기일에 맞추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입금자는 반드시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라며,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자 이외의 성명이나 타은행 입금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.)
- 임대보증금을 약정일(입점지정기간) 이전에 납부 시에도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, 분할납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- 계약자는 약정일(입점지정기간)내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점해야 하며, 잔금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해 연체요율(연6.5%)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 하여야 합니다.
- 잔금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점을 하지 않는 경우 및 잔금을 약정일(입점지정기간)로부터 3개월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.
-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, 연체요율은 연 6.5%가 적용됩니다. 우리공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8 유의사항 [신청 전 반드시 읽어보셔야하는 내용입니다.]

[공통사항]

- 입점신청 전 현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점자에게 있습니다.
- 계약자는 공급공고문, 관계도면 및 주요 계약 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,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.
- 상가임차인은 입주자대표협의회 및 상가 자치관리위원회와 상가운영 및 영업 등에 관한 사항 협의하여야 합니다.

- 우리공사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.
- 상가는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명기된 업종에 대해 영업이 가능하며, 규제사항은 건축법에 따릅니다. 단,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는 입점이 제한됩니다.
- 이밖에 상가내 영업업종은 법으로 허용된 사용 용도내 업종으로 개점하여야 합니다.
- 계약체결시 제소전화해동의, 의무이행, 방화 안전수칙 및 정상영업의무이행 약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계약종료시, 상가사용으로 인한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우리공사가 제시하는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향후 2년간 우리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상가 신청자격을 제한합니다.
- 상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(영업허가, 상가관리, 용도변경 등)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.
- 상가건물 내 타 임차인이 운영하거나 운영이 예정되어 있는 동일업종은 신청 불가합니다.
- 상가는 시설물(칸막이 벽, 천장 마감 등) 보수, 철거 및 추가 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나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로 임대하며 별도의 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**입점업체는 권리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.**
- 중도계약 해지시 귀책사유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-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계약갱신시 증가될 수 있습니다.
-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해당 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조례 및 규칙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표기, 시공하여야 합니다.
- 옥외광고물 설치 시 계약자 및 입점자가 직접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사용승인도서 상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목이 상가의 영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사업승인도서 이외의 진입로 및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 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단지 주변 상업근생용지, 단독필지 등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판매시설 등이 건축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보증금을 완납하기 이전에는 호실 내부 및 외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.
- 단지내 Gate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Gate의 위치를 확인하고 입찰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, 단지 Gate 및 조경식재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.
- 상가와 인접한 등의 저층세대 입주자들로부터 상가 영업과 관련하여 사생활침해, 소음 및 냄새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상가 영업과 관련한 민원은 입점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.
- 각 호실의 전기, 수도, 가스는 기본용량만 신청되어 있습니다. 이를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, 추후 공급회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- 상가 등 전체 전력 용량이 75kw 이상인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입점자는 입점자간 합의하에 입점기간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기안전관리업체와 계약하여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오니, 이점 유의하시어 과태료 부과 및 전기사용 불가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- 상가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, 재활용품은 아파트입주민과 별도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입주자의 복리증진 및 단지여건에 따라 복리시설을 신축하거나 단지의 진입로 및 울타리를 변경할 수도 있으며 상가 및 주변에 있는 지형여건에 따라 문주, 계단, 안내표지판, 화단, 옹벽, 쓰레기 분리수거함, 가감차선 등이 설치될 수도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변경 공사 시 기존 설치된 법적 소방시설물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약자 및 입점자는 변경 시 발생하는 하자 등의 모든 법적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.
- 상가 계약자 또는 입점자는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간(옥상, 복도, 계단, 상가 전용 주차장 등)을 전용하거나 무단점유 할 수 없으며, 이와 관련한 민원은 입점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.
- 입점 시 일부 화장실에 인접한 호실의 경우 소음 및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소 냄새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상가 공용부(화장실 등)에 대한 관리는 계약자 혹은 입점자에게 의무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우리공사는 금회 공급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가의 임대 촉진을 위하여 공급방법 또는 예정가격을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, 기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[블록별 유의사항]

<지금 A1BL>

- 상가 주차는 상가전면에 차량진입 및 주차할 수 없으며 상가 전용 주차장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.
- 상가후면 지상주차 7대(장애인주차 포함)는 상가전용 주차공간이며, 기타 단지내 아파트 주차장은 사용 불가하므로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호실내 별도 환기시설 및 냉·난방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단지내상가 에어컨은 입점자의 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, 에어컨 전원은 입점자의 비용으로 개별인출해야 합니다.
- 단지내상가 에어컨 배관이 시공되어있지 않으며, 추후 설치시 배관을 본인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합니다.
- 상가 각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는 각 호실마다 설치하여야 하며, 실외기와 관련한 민원은 계약자 및 입점자가 해결해야하는 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각 호실의 전기, 수도, 가스는 기본용량만 신청되어 있으며, 입찰 및 분양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, 추후 공급회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 - 전기 기본용량: 101~106호 9kW, 107~108호 26kW, 109~114호 9kW
 - 수도 기본용량: 전 호실 13A / 가스 기본용량: 전 호실 20A
- 상가 전기 인입은 저압수전(380/220V)으로 한국전력 PAD 변압기가 상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상가의 영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.

- 호실별 급수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, 입점후 급수배관공사(동파방지 포함)는 기존배관(급,배수 1개소 설치)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입주자의 비용으로 공사하여야 하며, 기 설치된 계량기를 통해 월 검침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동파로 인하여 발생된 누수하자는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도시가스배관은 상가 개별호실까지 기본배관만 설치되며, 가스계량기설치 및 각 호실 내 필요장소로 연결하기 위한 추가배관에 대한 비용은 각 상가 입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. 공급신청, 각종 인허가 사항, 계량기 설치비, 가스시설 분담금,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은 계약자(입점자)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본 상가는 전면부와 측면 및 후면의 단차로 인해 레벨이 있음을 숙지하고 이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102~103호, 104~105호, 106~107호, 108~109호, 110~111호, 112~113호 사이 **내력벽으로 점포간 확장이 불가능** 합니다.
- 101~107호 전면부 도로 출입로 단차 발생으로 계단이 형성됩니다.
- 108~109호, 110~111호, 112~113호 사이 단차(500mm)가 있습니다.
- 103호 전면부 버스정류장 설치 예정으로 103호 및 인근 호실의 간판 및 점포의 시야 확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모든 점포의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적용되어 있습니다.

<진건 A1BL>

- 상가 주차는 상가전면에 차량진입 및 주차할 수 없으며 상가 전용 주차장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.
- 3301동 전면 지상주차 3대는 상가전용 주차공간이며, 기타 단지내 아파트 주차장은 사용 불가하므로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상가 화장실, 주차장등은 공용부분이므로 특정 상가의 점용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호실내 별도 환기시설 및 냉·난방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음식점 입점 시 주방배기용 닥트설비는 계약자 또는 입점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, 음식점 입점 시 주방 등의 냄새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며, 이에 관련한 민원은 입점자가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.
- 단지내상가 에어컨은 입점자의 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, 에어컨 전원은 입점자의 비용으로 개별 인출해야 합니다.
- 단지내상가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기본용량에 따라 선시공 되어 있으며, 에어컨 추가 설치에 따른 냉매배관은 본인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합니다.
- 실외기실 인접한 상가의 경우, 실외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상가 각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는 각 호실마다 설치하여야 하며, 실외기와 관련한 민원은 계약자 및 입점자가 해결해야하는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각 호실의 전기, 수도, 가스는 기본용량만 신청되어 있으며, 입찰 및 분양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, 추후 공급회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 - 전기 기본용량: 101~106호 6kW, 공용전기 14kW

- 수도 기본용량: 전 호실 13A / 가스 기본용량: 전 호실 20A

- 상가 전기 인입은 저압수전(380/220V)으로 한국전력 PAD 변압기가 상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상가의 영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.
- 호실별 급수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, 입점후 급수배관공사(동파방지 포함)는 기존배관(급,배수 1개소 설치)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입주자의 비용으로 공사하여야 하며, 기 설치된 계량기를 통해 월 검침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동파로 인하여 발생된 누수하자는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도시가스배관은 상가 개별호실까지 기본배관만 설치되며, 가스계량기설치 및 각 호실 내 필요장소로 연결하기 위한 추가배관에 대한 비용은 각 상가 입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. 공급신청, 각종 인허가 사항, 계량기 설치비, 가스시설 분담금,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은 계약자(입점자)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상가 내 음식점이 입점할 경우, 유지류가 유입되는 유입구에 유지차단장치(그리스트랩)을 설치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하여야 함
- 본 상가는 전면부와 측면 및 후면의 단차로 인해 레벨이 있음을 숙지하고 이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상가 1, 2, 3, 6의 측벽부위는 내력벽으로 철거가 불가능합니다.
- 모든 점포의 출입문은 여닫이 도어로 적용되어 있습니다.

분 양 안 내(GH 경기주택도시공사 1588-0466)

※ 기타 공급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2부(031-220-329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1. 11. 26.

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